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256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희

담당변호사 장주동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3.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12486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채권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2019. 3. 27. 체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271호로 공탁한 34,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세입 · 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압류금지채권도 양도하는 순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조 제1항 제6호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입법화된 것인데, 채무자가 자신의 주거안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채권자들 중 한 명에게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권양도와 동시에 그 임대차보증금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것이 되므로 이러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고, 더 나아가 ‘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들 중 한 명에게만 압류금지채권인 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채권양도와 동시에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채무자 B의 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이 자신의 채권자들 중 한 명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채권양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부실화되기 직전에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1975년경부터 서울 I동 지역 거주 당시 인근 또래들로서 J대, K대, 의대 등을 진학한 친구들(남자 5명, 여자 7명)과 친목 모임을 계속하던 중 남자 동창 중 한 명이 B을 소개해서 함께 모임을 하게 되었고, B이 2006년경 C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6. 9. 29.부터 2018. 7. 31.까지 13년간 여러 차례 자금 융통을 해주면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 ② 원고는 B이 피고에게 2015. 12. 10.까지 매달 15만 원씩 입금하다가 그 이후 입금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2015. 12. 10.경 B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피고는 2016. 6. 27. B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29. B으로부터 150만 원을 상환받는 등 2018. 7. 31.까지 B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지속해 온 사실, ③ 또한 원고는 B이 피고 계좌에 2006. 12. 14. 20만 원, 약 2년 후인 2008. 3. 19. 2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전부여서 이를 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B이 2006. 9. 29.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제때 갚지 못하여 이와 같이 2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후에도 2009. 9. 19. 50만 원, 2011. 7. 14. 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2015. 12. 10.까지 계속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온 사실, ④ B은 2018. 7. 31. 피고로부터 C 명의로 2,000만 원을 빌렸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후

2018. 7. 3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합계 57,440,000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어 그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2019. 3. 2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이 피고에게 차용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정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이 가지는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덕식, 판사 조규설, 판사 신신호

별지

채권 목록

임차인 []이 임대인 []과 2018. 8. 21. 체결한 서울 동작구 []
[], []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5.
부터 2020. 8. 5.까지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인 []을 승계한 []에게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